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유예”**

1.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727(2015.6.11.) 및 서울시 세무과-13426 (2015.6.15.)호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와 관련입니다.
2. 메르스 사태와 관련, 우리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유예” 기준을 마련하여 메르스 피해자의 징수유예 신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체납액의 징수유예

○ 체납액의 징수유예 개요

- “징수유예 등”이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

○ 체납액의 징수유예 요건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으로
-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4호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가. **지원대상** : 메르스 피해자 (확진자·격리자, 휴업 병·의원 등)

나. **지원방법** : 메르스 피해자의 신청 (별지 제51호 서식)

다. **유예기간** :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최대 1년까지)

라. **징수유예 등의 효과**

- 유예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가산금·증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 금지 (교부청구는 제외)
- 체납처분 유예액을 표시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마. **홍보방법**

- 피해자 명단 확보시, 체납액의 징수유예 관련 안내문 개별 발송
- 향후 체납고지서(안내문) 발송시, 메르스 지방세 지원 안내문구 삽입

- 붙임 : 1.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세부실행 기준(행정자치부) 1부.
 2. 관련법규 1부.
 3. 관련서식 1부. 끝.

주무관 **이경희** 38세금징수팀장 **김희동** 세무관리과장 **신오식** 기획경제국장 **06/18**
문경수

협조자

시행 세무관리과-13694 () 접수 ()
우 135-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22 /전송 02-3423-8832 / halim225@gangnam.go.kr / 대시민공개